

나.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통지(영 제22조)

공청회 또는 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정책형성과정에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고 일반 국민들이 보다 활발하게 국민의견 수렴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노무현 인

2007년11월13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
행정자치부장 박명재

●대통령령 제20373호

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

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”을 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법”을 “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·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4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)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

하여야 한다.

1.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(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) 또는 장소 안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: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
2. 제4조의2제3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: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·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
3.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
 - 가.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
 - 나. 그 밖에 해당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·설문조사·여론조사 등의 실시

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안내판의 설치) ①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공기관의 건물 안에 다수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.

1. 원거리 촬영, 과속·신호위반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
2.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

③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하여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「군사시설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군사시설
2. 「통합방위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
3. 「보안업무규정」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

제4조의3(설치·관리 사무의 위탁) ① 법 제4조의3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
2.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

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,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,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야 한다.

제5조의 제목“(사전통보사항)”을“(사전협의사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개인정보화일보유”를 “개인정보파일보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개인정보화일”을 “개인정보파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명칭”을 “범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부서의 명칭 및 주소”를 “부서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의 적정성 여부

제6조의 제목“(사전통보의 적용제외)”를“(사전협의의 적용 제외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6조제2항제8호”를 “법 제6조제3항제8호”로, “개인정보화일”을 “개인정보파일”로, “화일”을 “파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개인정보화일”을 각각 “개인정보파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”을 “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”으로, “개인정보화일”을 “개인정보파일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“(개인정보화일의 공고)”를“(개인정보파일의 공고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① 법 제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또는 변경에 관하여 협의한 사항을 종합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전체 현황을 연 1회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9조의 제목“(개인정보화일대장의 열람장소)”를“(개인정보파일대장의 열람장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개인정보화일대장”을 “개인정보파일대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개인정보화일”을 “개인정보파일”로, “개인정보화일대장”을 “개인정보파일대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)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구축·운영하는 과

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적·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자치부장관은 홈페이지 개인정보의 노출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1항의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0조의3(개인정보의 위탁처리)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
2.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
3.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
4. 위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

② 공공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현황·입출력자료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
제11조의 제목“(처리정보의 제공)”을“(처리정보의 이용·제공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제공받고자”를“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·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
1. 개인정보파일의 명칭
2.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
3.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
4.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
5.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
6.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
7.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8.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
9.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령자에게 사용목적 등에 제한을 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

제12조의 제목“(처리정보의 제공제한)”을“(처리정보의 이용·제공 제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

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제공받은”을 “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”으로, “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10조제4항에 따른”으로, “제공을 중지”를 “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제공을 중지”로 한다.

① 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기관이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, 그 범위를 넘어 처리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개인정보파일의 파기방법 등) ①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려는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보유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제1항 본문 중 “7일 이내”를 “5일 이내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정정청구”를 “정정 또는 삭제 청구”로 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정정 또는 삭제의 청구) 법 제14조에 따라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하려는 자는 정정·삭제청구서를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정정의 결정 및 통지)”를 “(정정 또는 삭제의 결정 및 통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”를 “제17조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”로, “15일 이내”를 각각 “10일 이내”로, “정정조치결과통지서를 정정청구인에게”를 “정정·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”로, “15일의 범위내에서”를 “10일의 범위에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에 대하여 정정을”을 “제17조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”로, “정정거부등결정통지서”를 “정정·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정보의 정정청구”를 “제14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”로, “정정청구서”를 “청구서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청구 또는 정정청구”를 “제17조에 따라 열람청구 또는 정정·삭제청구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본문 중 “정정”을 “정정·삭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정정하게”를 “정정 또는 삭제하게”로, “정정청구”를 “정정 또는 삭제청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”을 “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제3호 중 “제공상태와 제공”을 “이용·제공상태와 이용·제공”으로 한다.

제23조의2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(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절차 등)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침해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침해사실을 신고한 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의2(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)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국무총리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말한다.

제24조의3(위원장) ①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4조의4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·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4조의5(위원회의 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.

② 제1항의 간사는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.

제24조의6(분과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24조의7(수당)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,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4조의8(운영세칙)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24조의9(개인정보관리책임관) 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관의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

1. 국가행정기관: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,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소속공무원
2. 지방자치단체: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소속공무원
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공기관: 소속 임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원

②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의 수립·시행
2.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침해 관련 민원의 접수·처리
3.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실태의 점검 및 감독
4. 해당 기관의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취합
5. 해당 기관에 소속된 다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총괄
6.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그 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
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규정된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5조의 제목“(정부투자기관등의 지도·감독)”을“(국가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·감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정부투자기관등”을 “국가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열람정정청구기회”를 “열람 및 정정·삭제의 청구기회”로 한다.

1. 처리정보의 보유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

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조치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◇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

공공기관이 범죄예방·교통단속 등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고,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8448호, 2007. 5. 17. 공포, 2007. 11. 18. 시행)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시 의견수렴절차, 안내판 설치기준 등 법률에서 새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◇주요내용

가.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시 의견수렴 방법 규정(영 제4조)

- (1)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시설이나 공공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행정예고·공청회·설명회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, 국가중요시설이나 군사시설 등에 보안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부서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.
- (2) 무분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르는 사생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,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사례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됨.

나.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안내판의 설치기준 마련(영 제4조의2 신설)

- (1) 공공기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때에는 설치장소마다 설치목적, 촬영범위와 시간 등을 안내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되, 과속단속이나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같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함.
- (2) 안내판을 설치함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신의 화상정보가 촬영·수집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본권 침해 위험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.

다. 개인정보파일의 파기방법 등 규정(영 제12조의2 신설)

- (1) 공공기관이 보유하던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토록 하고, 파기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.
- (2) 개인정보의 불완전한 파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라.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절차 등 규정(영 제23조의2 신설)

- (1)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고, 관계 기관이나 신고인의 의견을 들어 개인정보 침해여부를 확인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주도록 함.
- (2)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신속한 권익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.

마.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자격요건 및 업무 규정(영 제24조의9 신설)

- (1)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의 고위공무원이나 임직원 중에서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,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계획의 수립, 실태점검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.
- (2) 개인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, 보다 책임 있는 관리·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노무현 인

2007년11월13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
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

●대통령령 제20374호

관광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

관광진흥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관광진흥법 시행령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관광진흥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관광사업의 종류) ① 「관광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.

- 1. 여행업의 종류